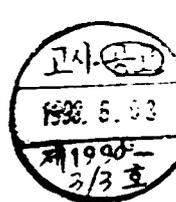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02) 3707 - 8115-6 /전송 (02) 3707 - 8129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제2동 3층) 담당:명대훈 계장:이준달

문서번호	건행58150 - 1945	취급			시 장
시행일자	'98. 6. 3	보존			
경유 (제1안)		도로국장	"전결"		
수신 내부결재		건설행정과장			
참조		시설관리계장			
		기안	명대훈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 입법예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기간 : '98. 6. 10. ~ 6. 30. (21일간)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1부. 끝.


 일 본 대 조 필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담당관

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의뢰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안 : 따로붙임. 끝.

도 로 국 장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98.6. 까지 귀 부서 및 유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따로붙임 1.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기획담당관, 서관 1 - 4, 서실국 1 - 16, 서본부 1 - 3, 서공 1 - 6
서의과 1-15, 서구 1 - 25(건설관리과장).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귀사 또는 귀협의회(조합) 산하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98.6. 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기일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따로붙임 1.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관계회사 명단(따로붙임)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호

공고 심사 1998. 6. 11	11	31
담당자	김계성	김정민
호	MJC	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취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정수업무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정수조례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

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외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다. 점용료의 정수유예등은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정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 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3707-8115~6, FAX 3707-812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100-7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6-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취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정수업무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정수조례→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정수조례

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외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다. 점용료의 정수유예등은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정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 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3707-8115~6, FAX 3707-812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100-7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를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로점용허가는 영 제24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기준이외의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고 분납점용료는 다음분기 개시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은 6월이내에 징수금액과 회수를 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력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력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력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력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p> <p>-----</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p> <p>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신설></p> <p>④(생략)</p> <p><신설></p>	<p>(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p> <p>-----</p> <p>-----</p> <p>-----</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고 분납점용료는 다음분기 개시일 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은 6월이내에 징수금액과 회수를 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예에 의한다.</p>